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 |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계약서류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기본이자율 (세금납부 전)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적용이율 (단위:%,연,세전)	DB형	1년	2년	3년			
		2.20	2.30	2.30			
	DC형 / IRP형	1년	2년	3년			
		2.10	2.20	2.20			
중도해지 이자율 (단위:%,연,세전)	DB형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0.40	0.50	0.60	0.75	1.10	1.15
	DC형 / IRP형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0.40	0.50	0.60	0.75	1.05	1.10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단위:%,연,세전)	DB형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20	1.50	2.20	2.30		
	DC형 / IRP형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20	1.50	2.10	2.20		

특별중도해지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p>▷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p>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p>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분할 지급 (일부 지급)	<p>▷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만기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예금자 보호여부	DC / IRP	<p>해당</p>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중 퇴직연금 별도</p>
	DB	비해당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